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문성혁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고래류 등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을 위해 원양어업자 준수사항을 정하고, 조업상황 등의 보고 주기를 완화하며, 행정처분 가중처분에 관한 일반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원양어업 시 고래류 등 해양포유류를 혼획 또는 구조하는 경우 이를 방류해야함을 정함(제22조1항제7호)

나. 원양 참치연승 어업자 및 원양 저연승 어업자 등은 조업 중 해양포유동물이 혼획되지 않도록 노력하고,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고하는 경우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조치를 마련하도록 정함(제22조1항제8호)

다. 조업관련 사항 중 양륙량 보고 주기를 완화(72시간 → 240시간)하고 해양포유류 부수어획 시 해당 사항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서식개선 등 (제23조의2, 제25조제3항, 제25조의2제1항, 별표 3 제1호 가목, 바목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은 2일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해양포유동물 등을 혼획하는 경우 또는 좌초·표류한 해양포유동물 등을 구조하는 경우 즉시 방류한다.
8. 원양 참치연승 어업자 및 원양 저연승 어업자 등은 조업 중 해양포유동물 및 지역수산기구의 보존조치로 정하는 포획금지 상어 등이 혼획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해양수산부 장관이 업종, 조업수역 등을 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해양포유동물에 대한 혼획저감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한다.

제23조의2 중 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항만국 검색관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”를 “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3항 중 “72시간”을 “240시간”으로 한다.

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포함한다)를”을 “포함한다), 고래류 등 해양포유동물 혼획 등 부수어획에 관한 사항을”로 한다.

별표 3 제1호 가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별표 3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별지 제17호의1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1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 별지 제17호의15서식 중 “바다거북류”를 각각 “바다거북류, 해양포유류”로 한다.

별지 제17호의16서식 중 “바다거북류”를 각각 “바다거북류, 해양포유류”로 한다.

별지 제17호의17서식 중 “바다거북류”를 각각 “바다거북류, 해양포유류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3 제1호 가목과 바목은 이 규칙의 시행 이전의 과거 위반행위에 가중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6조의2(원양어업허가의 유예) ① ·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6조의2(원양어업허가의 유예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⑤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은 2일로 한다.</u>
제22조(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)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(이하 “원양어업자등”이라 한다)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삭제 2. ~ 6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2조(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2. ~ 6. (현행과 같음) <u>7. 해양포유동물 등을 혼획하는 경우 또는 좌초·표류한 해양포유동물 등을 구조하는 경우 즉시 방류한다.</u>
<u><신설></u>	<u>8. 원양 참치연승 어업자 및 원양 자연승 어업자 등은 조업 중 해양포유동물 및 지역수산기구의 보존조치로 정하는 포획금지 상어 등이 혼획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해양수산부 장관이 업종, 조업수역 등을 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해양포유동물에 대한 혼획저감을 위한 조치를 마</u>

②・③ (생 략) 제23조의2(항만국검색관)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“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”이란 <u>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항만국검색관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</u>을 말한다. ② (생 략) 제25조(양륙량 보고 및 확인) ①・② (생 략) ③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해외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해외에서 양륙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해외 양륙 결과보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양륙을 완료한 때부터 <u>72시간</u> 이내에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④ (생 략) 제25조의2(조업상황 등의 보고)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 보고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작성하여 <u>국립수산물과학원장</u>에	<u>런해야한다.</u> ②・③ (현행과 같음) 제23조의2(항만국검색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양수산물부 소속</u> ----- ----- <u>해양수산물부장관</u> 이 정하는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25조(양륙량 보고 및 확인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40시간</u> ----- 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 제25조의2(조업상황 등의 보고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포함한다</u>), <u>고래류 등 해양포유동물 혼획 등 부</u>
---	---

게 보고하여야 한다.	수어획에 관한 사항을 ----- -----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366